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72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7

I. 개 요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2.
3. 회부연월일 : 2026. 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서 구체적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u>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생략)</u> <u><신설></u>	<u>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u>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u> <u>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u> <u>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u> <u>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推薦委員의 추천은 당해 黨部가 推薦政黨의 黨員이 아님을 증명하는 書類와 本人承諾書 및 住民登

⑩ 제9항-----

錄票 抄本을 첨부하여 書面으로 제출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權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調查할 수 있다. 이 경우 "黨部"라 함은 政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黨部가 없을 때에는 그 上級 黨部가 추천한다.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關係選舉管理委員會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 -----

 --. -----

 -----.

⑪ -----

 제7항-----
 -----.

⑫ ----- 제9항-----

 -----.

⑬ 제9항-----

 -----.

⑫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 公告日후에 당해 또는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전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⑬ (생략)

第5條(委員長) ① ~ ③ (생략)

④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

⑭ -----

제5항 단서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第5條(委員長)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u>第3項</u>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 ----- ----- ----- ----- <u>제5항의</u>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¹⁾

그런데,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²⁾ 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이 아닐 것만을 정하고 있음.³⁾

다수의 법률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위원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기관별 결격사유 및 퇴직·면직 사유》

□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법」)	
각급선거관위 위원 결격사유 [§4⑥(위원의 임명 및 위촉)]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 안 제4조제2항각호(중앙선거관위 위원 결격사유 신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임사유 [§9(위원의 해임사유)]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법원(「법원조직법」)	
법관 결격사유 [§43①(결격사유)]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단순위원)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파면사유 [§46①(법관의 신분보장)]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퇴직(면직)사유 [§47(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재판관 결격사유 [§5②(재판관의 자격)]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임사유 [§8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 국가인권위원회: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9], 면직사유[§8]
- 국가교육위원회: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7], 면직사유[§6]
- 국가공무원4): 결격사유[§33], 당연퇴직[§69], 직권면직[§70]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부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안은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위원의 임명 단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차단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신설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현행보다 제한하게 되는바, 개별 결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 당원의 신분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치활동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규정이 지나친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위헌확인[2021헌마460, 2024. 7. 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즉,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음으로, 제2호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와 제6호의 결격사유(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고,⁵⁾ 선거운동 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는 경우와는 달리 선거 대책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자문·고문은 별도의 등록·신고 규정이 없어 실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⁶⁾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음.

6) 개정안에 대한 중앙선거위원회의 검토의견

다만, 해당 사유들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의 결격사유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헌법기관 주요 구성원 세부 결격사유 비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안 §4②각호]	법원조직법 [§43①]	헌법재판소법 [§5②]]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단순위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소극적 자격요건으로서의 필요성과 함께 타 헌법기관 구성원과의 균형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개정안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있고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둘 필요는 없는지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 선고자에 대하여 형의 실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최근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선거대책기구 자문·고문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결격사유의 범위와 제한 기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